

사단법인 경기도박물관협회 정관

2004. 04. 29 설립 등기
2007. 11. 26 정관 개정 (공동대표에서 회장제로 변경)
2011. 03. 22 명칭 변경 및 사업 추가
2011. 05. 26 주소지 변경
2011. 06. 23 위 내용 일괄하여 변경 및 추가 등기
2014. 02. 11 소재지 및 정관 일부 변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경기도박물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칭하며, 영문은 The Gyeonggi-do Museum Association (약칭 GMA)으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에 둔다.
<2014.2.11. 개정>

제3조(목적) 본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경기도 내에 소재한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건전한 박물관·미술관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의 박물관·미술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2.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과의 정보교류 및 홍보사업
3. 연구발표회, 학술지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
4.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5.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사업
6. 박물관 협력망 사업
7. 박물관.미술관 직무연수 교육사업 <2014.2.11. 신설>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필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

인을 얻는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참여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1. 정회원 :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장으로 공동관장의 경우 대표관장
2. 명예회원: 경기도 박물관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3. 특별회원: 본 협회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국, 내외 기관, 단체
3. 개인회원: 협회에 소정의 등록을 한 개인회원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 ·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칙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입회비,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기 납입금과 기타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 견책 ·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3호를 해태할 경우 제8조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며 3년간 연 회비를 미납할 때에는 회원으로서 존속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탈퇴 한 것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선출직)
2. 부회장 5인 이하(임명직)
3. 이사 10인 이하 (임명직)
4. 감사 2인(선출직)

제13조(임원의 선임) ①선출직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선출직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다.

③새로운 선출직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한다.

④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 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⑤부회장과 이사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동의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⑥임원의 취임에 관해서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총회에서 승인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되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단,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이사회가 부회장 중에서 선임하여 그 직을 승계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팩스, 전자문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014.2.11. 개정>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출석 및 의결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위임장은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2.11. 개정>

③공동관장으로 등록된 관은 공동관장 간 위임할 수 있다. <2014.2.11. 개정>

④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거나 문화재단이사장, 또는 대학교 총장으로 된 회원관

은 관련 최고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4.2.11. 신설>
⑤정관변경은 제45조(정관변경)에 의한다. <2014.2.11. 개정>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 까지 문서(팩스, 전자문서포함)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1인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제23조 총회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①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④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⑤재산관리(자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⑥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⑦결원된 임원의 승인사항
- ⑧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⑨정관과 규칙(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⑩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47조(규칙제정)에 필요한 사항
- ⑪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이사회 의결제척)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는 제24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와 같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본회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5조의 정관변경 절차와 같은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4.2.11. 개정>

②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지원금 및 보조금
3. 후원금 및 출연금

- 4. 지정기부금
- 5. 기타 수입금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①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결산서는 연간 수입, 세출내역 및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을 포함 하여 본 회 홈페이지에 회계연도종료 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2014.2.11. 개정>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및 운영에 관한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014.2.11. 개정>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및 기타회원

제41조(명예,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또는 협회 발전에 유공한 기관,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42조(명예회원, 특별회원의 권리 및 의무 등) ①명예회원,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43조(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①본회의 발전을 위해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은 회장의 임기를 수행 한 분으로 하고 자문위원은 박물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③고문과 자문위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④고문과 명예회장,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과 같다.

제9장 보 칙

제44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정관변경) ①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원하며 출석 및 의결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은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014.2.11. 개정>
②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제46조(업무보고) 익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끝.